

# 2024년 제2회 영동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4년 7월 31일

영동군인사위원회위원장

##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선발예정인원	임용기간	근무예정처	비고
전기안전관리	일반임기제공무원 (7급)	1명	임용일로부터 1년	재난안전과	※임용권자가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계약 할 수 있음.

## 2. 응시자격요건

### □ 공통요건

- 지역 · 성별 : 제한없음
- 연령 : 18세이상 (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 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에 의하여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 6. 18.>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 채용분야 자격요건

구 분	응시자격 요건
전기안전관리	<p>□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다음의 자격 및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ul> <p><b>【관련분야】</b>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법인 등에서 관련 업무경력</p>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 직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 3. 직무범위(내용) 및 특성

임용분야	직무내용
전기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펌프장 및 배수문 관리</li> <li>▶ 재난 예경보 시설 관리</li> <li>▶ 재난안전 시설물 관리 등</li> </ul>

## 4. 보수수준 및 근무조건

< 보수수준 >

○ 연봉

※ 연봉한계액 기준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일반임기제(7급)	66,396천원	47,157천원	

- 신규임용시 연봉책정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에 의함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신규임용시 연봉책정) 제3항

·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별표1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퍼센트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책정할 수 있음.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 관련법령에 의하여 별도 지급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1년간(임용일 미정)
  - ※ 근무실적 평가 후 보수 및 계약연장 가능(최대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 시험일정

시 험 명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
2024년 제2회 영동군 지방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2024. 8. 12. ~ 8. 14. (3일간)	2024. 8. 21. (예정)	추후 별도 공고	

※ 면접시험 일자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고 예정

### ○ 시험방법

####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임용자격기준 심사, 각종 증빙서류의  
검증 및 확인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 적합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5대 평정요소에 따라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5대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  
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

-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면접평정  
“상”의 개수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합격자 결정

- ※ 면접결과 공개: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 공개 (단, 평가요소별 상·중·하는 비공개 대상)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의안번호: 제2023-225호 / 의결: 2023. 2. 28.)

○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별도 공고

- 개별통보 및 영동군청 홈페이지(www.yd21.go.kr) “시험채용”란에 공고

##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8. 12. ~ 8. 14.(3일간)

○ 접수처 : 영동군청 2층 행정과(행정팀)

- 전화 : 043-740-3153

- 주소 : (29140)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청 행정과  
채용업무담당자(응시원서 재증) 앞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 방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접수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방문접수시 응시번호가 기재된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2024. 8. 14.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응시수수료를 ‘영동군수입증지’ 또는 우체국의 통상환증서(7천원 상당)로 동봉해야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는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 등기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한 응시자는 접수기간 내에 전화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 응시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제출 서류 미비, 기재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으며  
분할접수 및 단체접수는 불가,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받지 않음

○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글번역문(공증필)을 첨부하여야 함

## 7.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영동군 수입증지 7,000원<영동군청 행정과(2층) 판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자격·면허증명서(사본제출)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기간(근무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것으로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발행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증명서 발급기관의 발급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기재사항 미비 등 경력확인이 불가능할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 특히 담당업무가 지원하는 분야의 실무경력 인정범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근로계약서, 내부인사카드, 업무분장 내부결재 및 분장표 등 첨부
  - 비정규직 및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인정  
(예시) 4년간 주20시간 근무한 경우 :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 제출서류는 상기 순번대로 정리한 후 제출

## 8. 기타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의 채용서류는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참고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결정 후 또는 임용 후에도 그 결정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지원자는 기재출 서류로 같음.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차하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합니다.(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함)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영동군 홈페이지([www.yd21.go.kr](http://www.yd21.go.kr)) “시험채용”란에 별도 공고합니다.
- 응시자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응시원서에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행정과 행정팀(☎043-740-31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